

1990. 6. 15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고 건수
편집인: 공보관 유 천 수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차 례

물품관리전환 소요조치 3

제2621호	서울특별시화재예방대책중개정조례	4
제2622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4
제2623호	서울특별시지방행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5
제2624호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조례중개정조례	6

제2343호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6
제2344호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7

[illegible]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양독일시

●고 시		
제 132 호	도시계획사업(하천복개)실시계획인가	9
●공 고		
제 355 호	제2종전기공사면허취소공고	11
제 358 호	공공용지하주차장건설및운영사업자선정공고	11
제 361 호	관인재교부공고	11
●구 고 시		
제 1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경동포)	12
제 13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노원)	12
제 19 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시행허가 (송파)	12
제 20 호	도시계획시설(하천,도로)지적승인 (송파)	13
●구 공 고		
제 46 호	도시계획안공고 (성북)	13
제 86 호	관인신조 (동작)	14
●사 령		

공 문 시 행

서울특별시

건 자01754-

434-2031

1990. 6. 15

수 신 수신처참조

제 목 물품 관리전환 소요 조회

1. 우리시 건설자재사업소에서 보유중인 아래 물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 조회하오니 소요 회망부서에서는 '90. 6. 30 한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위 기일까지 관리전환 요청이 없을시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 아 래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취 득 가 액	취 득 연 월 일	상 태	보관장소	비 고
고착식 크랫사	200T/H	대	1	362,686천원	77. 9	요정비	난지도 임 시 적치장	부속품 포 함
"	150T/H	"	"	184,250천원	78. 1	"	"	"

끝.

서울특별시강

수신처 : 서울 전기관.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화재 예방조례를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서울특별시조례제2621호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중 “지정수량미만(일반주택,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비닐하우스 등의 난방용 및 농기계용 유류취급장소 등은 제외)의 위험물”을 “지정수량미만(일반주택,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및 농기계용 유류취급장소 등은 제외)의 위험물과 지정수량이상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농예용 난방위험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1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를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6. 15

서울특별시장 고 건

●서울특별시조례제2622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정가구정비지구, 별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건축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1,000퍼센트이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900퍼센트이하, 준주거지역안에서는 7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강북 4대문자지역에서의 학교이적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율을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600퍼센트이하,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200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율을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1,000퍼센트이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900퍼센트이하,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300퍼센트이하, 준주거지역안에서는 500퍼센트이하로 할 수 있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목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권을 받았거나 건축허가권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2]

용 적 율 (제39조제1항 관련)

(단위 : %)

용 도 지 역	지 역	용 적 율	
전 용 주 거 지 역		80	
일 반 주 거 지 역		300	
준 주 거 지 역		500	
중 심 상 업 지 역	강 북 지 역	4대문내 지역	700
		4대문외 지역	900
		강남지역(여의도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0
일 반 상 업 지 역	강 북 지 역	4대문내 지역	670
		4대문외 지역	900
		강 남 지 역	1,000
근 립 상 업 지 역	강 북 지 역	4대문내 지역	670
		4대문외 지역	700
		강 남 지 역	700
전 용 공 업 지 역	강 북 지 역	200	
일 반 공 업 지 역	강 남 지 역	300	
준 공 업 지 역			
보 전 녹 지 지 역		50	
자 연 녹 지 지 역		60	
생 산 녹 지 지 역		150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90. 6. 15

서울특별시장 고 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2623호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4. 전산분야중 "전산처리관"란 앞
에 "전산기획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산기획관	4급상당	전자계산소의 전산업무운영에 관련 연구개발 및 소장보좌	1.4년제대학 전산관련학과 졸업자로 서 9년이상 실무경력자 2.정보처리기술사 자격취득후 4년이 상 실무경력자 3.일반직 5급또는 별정직5급상당이 상으로 4년이상 전산업무 경력자 4.전산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총무처예규 제217호 (89. 3. 29)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6. 15

서울특별시장 고 전

◎서울특별시조례제2624호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9인”을 “12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투자관리관, 산업경제국장 및 시민생활국장과 다음 각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정자문위원 2인
2. 공기업분야 교수 1인
3. 언론기관 간부 1인
4.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간부 1인
5. 대한상공회의소 간부 1인
6. 공인회계사 1인

제4조중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이 아닌위원의 임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6. 15

서울특별시장 고 전

◎서울특별시규칙제2343호

서울특별시광고물등
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2) 옥상광고물의 규격란 제2호중 “1/3”을 “1/2”로 하고, 설치방법란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승강기탑, 계단탑, 방풍,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각의 경우 그 옥상 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건축법시행령에 정한 건축면적)의 1/8이하
-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물의 옥상구조물의 면적의 적상 수적면으로부터 돌출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송사무처리규칙중 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1990. 6. 15.

서울특별시장 고 전

●서울특별시규칙제2344호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서울특별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하 “중요소
송”이라 한다)으로서 소송물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건의 승소사액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소송심의회가 결정한 금액으
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소송심의회) ①중요소송의 대책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소송심의회(이하 “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결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소사액
금의 결정
4.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
원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주관국장(소송주관과장의 직속상
관을 말한다), 소송주관과장 및 법무담당
관이 된다.

④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
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
사는 법무담당관실 송무2계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담당관실 소속 담당직원이
된다.

⑤심의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석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⑥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60,000원”을 “10만원”
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30,000원”을 “5
만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행중인 소송사건의 사례금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
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전행중인 소송사
건에 대한 사례금의 지급에 관하여도 이
를 적용한다.

(별 표) 소송수입료등 지급기준 (제28조1항 관련)				
구분 소송	내 용 (소송물가액)	지 급 기 준		
		착 수 금	사 례 금	공 통 정 비
민 사 소 송	1. 신청사건	100,000원	1) 50%이상 60%미	1) 인지대 : 실액
	2. 경미 또는 동일성 사건	70,000원	만송소시는 착수금	2) 송달료 : 실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본안 사건		에 송소비용을 곱 한 금액	3) 검중, 감정비 : 실액 (단, 소송 대리인 수행시 30,000원 별도로 지급한다)
	1) 500만원 미만	250,000원	2) 60%이상 80%미	4) 출장여비 : 국내 여비 규정 별표1 의 제1호에 의한 여비
	2) 500만원 이상	400,000원	만 송소시는 송소 비용에 10%를 가 산하여 착수금과 같은 금액	5) 기타 : 실비
	3) 1,000만원 이상	600,000원	3) 80%이상 송소시 는 송소비용에 20 %를 가산하여 착 수금과 같은 금액	
	4) 3,000만원 이상	1,200,000원	4) 소취하(성불취하 포함)시는 착수금 의 반액(단, 조건 부취하는 제의한다)	
	5) 5,000만원 이상	2,000,000원		
	6) 1억원 이상	3,000,000원		
	7. 중요사건(당시 행·재 정에 큰 영향예상사건)	1,500,000원내지 3,000,000원		
행 정 소 송	4. 환송심	원심의 1/2		
	1. 신청사건	100,000원		
	2. 각심본안사건	500,000원 (단, 소가액3천 만원 이상은 민사소송의 예 에 의한다)		
	3. 중요사건(당시행·재 정에 큰 영향예상 사건)	1,500,000원내지 3,000,000원		
송	4. 환송심	원심의 1/2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82호

도시계획사업(하천복개) 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451호(89. 10. 1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조경부)와 서초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인다.

1990. 6. 1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서초구 방배동 430번지의

3~821번지간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하천복개)

다. 사업의 명칭: 사당천 복개공사

라.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의 규모: 폭 25~30m, 연장 870m 중 610m 면적 20,409㎡

바. 설계도서: 별첨 (생략)

사.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년월일: 인가일~1990. 12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소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별첨 토지조서

자.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토지조서

차. 기존의 공공시설: 별첨 기존의 공공시설 조서

카. 기 타: 공사완료후 복개지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3조(하천에 대한 결정기준)제2항에 의거 도로, 광장, 주차장 및 녹지 등 도시공간 시설토관 사용할 수 있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 호	소 유 자		지 목	지 적	면적(㎡)		소 유 자		비 고
	구 동	번 지			영구	일시	주 소	성 명	
1	서초구 방배동	686-152	구	1,580	1,123	181		국유지	
2	"	387-11	전	86	20	38		서울시	
3	"	387-15	"	93	-	8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1가 1-2	김규순	()는 민원인 의견·별첨 의견서참조
4	"	388-5	답	406	83	210	서울 중구 경동 34-7	조봉구	
5	"	389-1	전	1,418	740	263	서울시 서구 신당동 52-114	최병현외1인	
6	"	819-34	도	8,624	-	48		서울시	
7	"	390-1	답	615	470	138	서울시 중구 신당동 52-114	최병현외1인	
8	"	829-3	대	164.9	-	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7	김달용	
9	"	828-1	"	227	-	33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28-1	유정애	

번 호	소 유 자		지 목	지 적	권입예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구	동 번 지			영구	일시	주 소	성 명	
10	서초구	방배동 828-3	대	182.2	—	24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18-4	김부지	
11	"	828-8	"	176.1	—	18	서울시 서초구 장원동 130-1	최병근	
12	"	686-41	구	1,332	939	181		국유지	
13	"	828-9	대	168.7	—	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390-3	김해용	
14	"	3151	천	1,547	951	391	—	국유지	
15	"	1511	"	952	340	170	—	서울시	
16	"	686-51	구	1,438	1,107	261	—	국유지	
17	"	419-2	답	218	117	62	—	서울시	
18	"	493-2	천	6,719.8	4,389	1,225	—	"	
19	"	863-8	도	2,539.2	—	17	—	"	
20	"	866-13	구	147.8	—	46	—	"	
21	"	865-36	"	224.9	—	33	—	"	
22	"	491-3	도	150.2	—	75	—	"	
23	"	491-1	답	4,043	49	150	서울시 중구 퇴계로2가 305	중앙산업(주)	
24	"	493-1	천	7,254.4	6,199	504	—	서울시	

○ 기존의 공공시설 조서

번호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권입면적(㎡)	소유자	종류	비고
1	서초구 방배동	686-152	구	1,580	1,304	국유지	하천	
2	"	387-11	전	86	.58	서울시		
3	"	819-34	도	8,624	48	"		
4	"	686-41	구	1,332	1,120	국유지		
5	"	3151	천	1,547	1,342	"		
6	"	1511	"	952	510	서울시		
7	"	686-51	구	1,438	1,368	국유지		
8	"	419-2	답	218	179	서울시		
9	"	863-8	도	2,539.2	17	"		
10	"	866-13	구	147.8	46	"		
11	"	865-36	"	224.9	33	"		
12	"	491-3	도	150.2	75	"		
13	"	493-2	천	6,719.8	5,614	"		
14	"	493-1	"	7,254.4	6,703	"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355호

제2종 전기 공사업 면허취소 공고

전기 공사업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 처분하였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6. 15.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1274	전진실업(주)	김용진	반포동748-3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면허취소

●서울특별시공고제358호

1990. 6. 13.

공공용지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고 제18호(90.1.15)에 따라

공공용지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공공용지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2. 사업지별 선정사업자 및 건설규모

사 업 지	위 치	선 정 사 업 자	건 설 규 모
동대문운동장	중구 신당동 251-7일대	동 부 건 설 (주) 대표이사 홍관의	자주식 지하6층 연 14,527평, 1,208대
독 정 공 원	중구 충무로 5가 21	동 현 건 설 (주) 대표이사 정한균	자주식 지하4층 연 5,798평, 504대

3. 사업자 이행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여 '90.9.12까지 우리시에 기술심사 요청을 하여야 함.

나.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사가 완료된 후 10일이내에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서울특별시공고제361호

관인재교부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관인을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함을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0. 6. 14.

서울특별시장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1990년 6월 20일
2. 관인 재교부 내역

인 영	신	규	폐	기
				
공인명	도봉구청장직인(지적사무용)			

구 고 시

●영등포구고시제11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6. 11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대한항공 직장주택조합 439명
한국디지털 직장주택조합 22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85번지 1호
나. 대지면적: 17,854.5㎡
다. 건축면적: 51,248.9㎡
라. 규 모: 지하1층, 지상20층
마. 사업시행기간: 90.6~91.12

●노원구고시제13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6. 15.

노 원 구 청 장

1. 사 업 명: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주)진로유동 직권주택조합의 2개조합
3.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치: 중계동 67-5의 7필지
나. 대지면적: 8,828㎡

다. 건축면적: 20,155㎡

라. 규 모: 아파트 13층 1동 192세대
〈부대시설: 노인정 및 관리실 판매시설〉
마. 사업시행기간: 90.6~91.9.

●송파구고시제19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시행허가

1. 송파구공고제10호(90.1.30)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완료공고된 송파구 오금동 90번지에 가락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정정 및 유개차고 설치코자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시행허가 신청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과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의 변경시행을 허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니다.

1990. 6. 11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송파구 오금동9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시행

다.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당초: 4,066㎡

· 변경: 4,192.8㎡

· 건축면적-당초: 400.80㎡

· 변경: 520.80㎡

· 건축면적-당초: 1,751.93㎡

· 변경: 1,871.93㎡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590-5

신흥교통(주) 대표이사 임성빈의 1인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90.6~90.1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
과 소유권 이외의 명사: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생략
마. 시행허가 설계도서 별첨(생략)

●송파구고시제20호

도시계획시설(하천, 도로)지적승인

1. 서울시 고시 제236호(89.5.18) 및 같은
고시 제143호(90.5.22)로 결정 및 변경결정
된 도시계획시설(하천, 지하도로)에 대하

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
민봉사실 풍납1동, 풍납2동, 오금동에 비치
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6. 11

송 파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하천, 지하도로) 지적승인
조서

○ 하 천

구 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기 정	25-85	2,712	마 천 동 200	오 금 동 30	서고409(79.9.17)과 서고703(85.10.17) 로 이중결정된 성내천 제1천 300m
변 경	25-85	2,387	마 천 동 200	오 금 동 171	구간중 1979.9.17고시선 폐지

○ 지하도로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지하도로	풍납동214의 10일대	A=4.5-6.6m L=176m A=1,043㎡	한강시민공원 진입로

나. 도면-별첨도면 표시와 같음(생략).

구 공 고

●성북구공고제46호

도시계획안공고

1. 우리구 도시계획 시설(학교, 공공의정사)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관련도서를 보임

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1990. 6. 14~1990. 6. 29

나. 공람장소: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다. 관련도서: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도면생략)

1990. 6. 15.

성 북 구 청 장

○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의정사) 결정
및 변경결정

· 학교 및 공용의청사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학 교	안암동5가 157	23,575	증양승가학교 면적 증가
변 경	"	"	25,225	1,650㎡
기 정	"	성북동 66-1	14,369	성북국민학교 면적 감소
변 경	"	"	13,869	500㎡
신 설	공용의청사	"	500	성북동 성암 파출소

●등작구공고제86호

관인신조(개각)

우리구 사당제4동 민원사무전용 관인 및 계인을 신조(개각)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등작구 관인규칙 제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6. 12

동 작 구 청 장

1. 관인명 : 관인 : 사당제4동장(민원사무전용)
계인 : 사당제4동(민원사무전용)

2. 사용개시일 : 1990년 6월 20일

3. 관인인영

인	신 규	패 기
영	 	 
공인명	사당제4동장직인 및 계인 (민원사무전용)	

사 령

© 1990년 6월 12일 5급 행정직 공무원 파견 및 검인 령 제221호

성 명	발 령 사 항	장 부 서	현 직 위	직 급
성 오 대	국무총리행정조정실파견 근무 불 명함 (‘90.6.12~’90.12.31)	상 공 파	표 준 계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재 전	상공과 표준계장에 검임함	상 공 파	공 정 계 장	지방행정사무관

7급이하 공무원 특별임용(국비-지방비)				령 제22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장새벽	행정주사보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이창호	지방행정주사보	성북구	행정주사보	
이대형	지방행정주사보	마포구	행정주사보	
김영성	행정주사보	마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최봉주	행정서기	강남구	지방행정서기	
◎1990년 6월 14일 8급 공무원 휴직				령 제22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석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양정과	행정서기	
◎1990년 6월 15일 8급 공무원 전출				령 제22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전형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전출을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송완진	경기도(부천시)전출을 명함.	"	"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전보				령 제22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수복	상수도사업본부	송파구	지방화동기사보	
조성권	노원구	강남구	지방지적기원	
조예환	중합건설본부	도봉구	지방전기기사보	
이영근	"	탄천하수처리장	지방기체기사보	
송은영	"	서초구	"	
임훈희	"	세종문화회관	"	
이종근	자동차관리사업소	서초구	지방기체기원보	
8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파견(재해대책본부요원)				령 제22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봉진	지수과(재해대책본부)파견 ('90.6.15~'90.9.30)	종로구	지방토목기원	
김원규	"	용산구	"	
이응규	"	도봉구	"	
윤방식	"	중구	지방토목기원보	
김호원	"	성동구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과급
김태용	치수과(재해대책본부)과전 ('90.6.15~'90.9.30)	서대문구	지방보육기원보
하진수	"	성북구	"
박준배	"	동작구	"
공무 국외 여행 명령 통보			
여행자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공무원교육원 기획과	지방서기관	채승기	'90.7.3~7.11 (9일간) 국토보육원 부담 '90공산국가 현지체험 연수
행정과	지방행정 사무관	최영복	'90. 6. 19 ~ 6. 27 (9일간)
공무 국외 여행 명령 통보			
여행자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전자계산소	지방행정 사무관	조성린	'90. 6. 18 ~ 6. 27 조청자부담 유니시스 이용자 전산 연수
"	지방행정 주사보	유운호	"
공무 국외 여행 명령 통보			
여행자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주택개발과	지방행정 사무관	김연수	'90. 6. 22 ~ 6. 28 (7일) 시비 (3,243불) ESCAP/인 간정주관리 를 위한 "오 랜지"개발 계획 세미나 참석
"	지방건축 기사	최중선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사령

◎1990년 6월 14일

7급 기술직 공무원 직위 해제

명 제63호

인비 번호	성명	제청	현직	
			부서	직급
1	조 찬 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함. (‘90.6.14~9.13)총무부 대기근무를 명함.	급수부 누수방지과	지방수도 토목기사보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